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곶노동법률사무소,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여성단체연합)

일시 : 2022년 12월 26일(월)

수신 : 재단법인 CBS

참조 : 재단법인 CBS 기획조정실, 재단법인 CBS 경영본부

제목 : 경남CBS 아나운서에 대한 정상적인 원직복직 촉구의 건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남CBS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최태경 아나운서에 대하여 ‘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정’하였고, CBS가 최 아나운서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최 아나운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CBS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복직시켰습니다. 이는 경남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4. 경남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은 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원래 수행하였던 업무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복직이라는 CBS의 주장은 다른 방송사의 사례와도 어긋납니다. KBS와 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회사로 복귀한 방송작가의 경우에도 모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이 뿐만 아니라 CBS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로 보았던 증거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위법적인 행태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 최근 방송사와 이름뿐인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역할을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방송사의 위법적 관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CBS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

참여야 할 것입니다.

7. 최태경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서 1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결성된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CBS의 행위가 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노동권 침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이에 다음의 조치를 CBS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30일(금)까지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최태경 아나운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할 것.

하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성 징표를 삭제하기 위해 행하는 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들을 중단할 것.

하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최태경 아나운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상 권리를 보장할 것.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문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010-9930-4650)

TEL: 1833-8261 E-mail: hanbitcenter@gmail.com